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중전기기 PL상담센타

1. 긍정적인 영향

가.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전체적으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리콜제도와는 다르다. 리콜제도가 결함제조물로 인한 위험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은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제조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사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고려·검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물의 개발·제조·표시·검사 등의 과정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여부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제조물책임하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이며 일반인이 판단하기 쉬운 요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제조업자가 쉽게 사후예측을 하게되고 제조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나. 소비자보호의 충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사고피해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충실히 되며,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재판외에서 분쟁해결이 촉진된다. 제조물책임은 실체법상의 관점에서 손해전보기능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지만 분쟁해결이라는 사회제도·절차법상의 관점에서 보면 제조물사고에 기인하는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인정된 제조물책임은 그 법적인 성질이 민사실체법이지만 ① 제조물의 객관적인 사실인 「제조물의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함으로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점 ② 주관적인 요건인 「제조물의 과실」의 판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곤란을 해소함으로써 제조물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점 ③ 「제조물의 결함」의 판단기준은 결국 사회적인 상식, 사회통념에 의하여 되므로 법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재판외의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제조물책임에 수반되는 이러한 특징은 제조물사고에 관한 분쟁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 특징을 살려서 제조물책임제도를 운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입증의 곤란으로 구제받지 못한 클레임·소송건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제조물책임법 제정으로 오히려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게되어 궁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나친 소송남발에 의한 제조물책임소송의 급증, 보험료의 고액상승, 그에 따른 기업도산 등의 이론바 제조물책임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소송제도와 사회환경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식의 제조물책임위기가 초래될 우려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의 입장에서도 제품안전대책이 기업경영의 중요 관심이 되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된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의해 기업은 결합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되고, 만일 결합제품을 시장에 내어 놓았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구제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제조물책임의 방어(PLD)라고 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품사고를 방지하는 제품안전(PS)과 이것을 통한 고객만족(CS)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몰두해야 할 과제이다. 궁정적으로는 기업이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게 되어 제품경쟁에 우위를 가지는 효과도 있다.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에 의해 제조물 구입자(소비자)의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조업자 「안전한 제조물」이 중요한 세일즈포인트로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제조물을 구입할 때, 같은 제조물중에서 선택할 요소로서 「제조물의 안전성」이 높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물의 호환성」, 「제조물의 다양성」, 「제조물의 사용편리성」보다는 「제조물의 안전성」에 제조업자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안전한 제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컨대 「PL」이라는 마크나 「제조물 책임 대응상품」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제조물책임에 합치된 제조물을 제조·판매하지 않으면 제조물이 경쟁에서 타격을 입어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사태도 쉽게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개발·판매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2. 부정적인 영향

가. 제조원가의 부담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면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여지고 이에따라 제품안전에 드는 비용과 PL보험료가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수익을 압박할 수 있다. 특히 리콜제도의 도입으로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PL보험은 제조물책임위험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고객의 비용과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에게 닥칠 수 있는 징벌적배상금은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나. 인력자원의 낭비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제조물책임 사건이 기업의 중요사안으로 부각되고 장기화되면 최고경영자는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영전략수립과 집행에 충분한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작성과 준비에 많은 인원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나아가 설계·품질관리·경고파트의 책임자나 기술자가 본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몇 년간 PL소송에 관여하는 낭비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1989년 미국의 GM사는 픽업트럭의 충돌로 인한 폭발사고로 10대 소년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에서 4년간이라는 장기전을 치루어야 했다. GM사는 93년에 1억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 주어야 했지만 그보다는 4년동안 투입한 트럭 두 대분의 자료제출과 250명의 인원동원으로 인한 인력자원과 비용이 훨씬 컸다고 토론한 바 있다.

다. 신제품개발의 지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요건으로 기업에서 엄격한 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제품의 안전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제품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신제품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비록 개발위험의 항변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제조당시의 최고의 과학·기술수준으로도 제조물의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라. 기업이미지의 실추

제조물책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피해배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기업이미지의 실추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마쓰시다(松下)전기가 제조한 TV의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제조자가 소송에서 패소(배상금 : 440만엔)하자 동일한 TV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전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신문등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기업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

대기업의 경우 과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수출품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제조물책임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전사적 체제구축을 하였다. 그러나 자본 및 인적조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며, 이로 인해 제조물책임법시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하게 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자금의 부족

대다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능력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간동안의 고객이탈에 의한 시장점유율하락 및 운용자금부족에 의한 도산위험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 취약한 사전 교섭력

제품결함에 의해 소비자와의 문제발생시 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교섭력은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며, 이로인해 피해의 규모가 실제보다 더 크게 산출되며 기업의 피해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 제조원가의 부담

제조물책임법시행 비용의 경우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제품단위당 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낮은 가격에 있음을 고려할 때, 높은 단위생산비는 대기업과 관계에서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악화

제조물책임법시행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의 책임회피를 위해 디자인이나 제조의 「승인도 방식」의 발주를 「대여도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협력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발주품을 내부생산방식으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모기업이 제품안전 명목으로 품질향상을 요구하거나 검사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성이 높아 경영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마. 기술혁신활동의 위축

사내의 무분별한 제조물책임 강조에 의해 조직이 경직화 될 수 있으며 개발비용의 상승, 고성능 검사기기의 도입, 리드타임의 증가 등에 의해 신제품개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바. 높은 보험부담금

대기업은 자기보장능력이 높고 산업특성상 위험율이 높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을 회피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큰 비용부담에 의한 도산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사. 정보능력의 부족

소송이 제기될 경우 많은 제품관련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수집·분석·보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 사후관리능력의 부족

제조물책임분쟁이 해결된 이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속적인 소비자교육과 악화된 회사이미지나 브랜드이미지 확보를 위해 많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은 불리한 상황에 있다.